

# 사업 문의처

## ○ 행정안전부

-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☎ 044-205-5199 / ldi0703@korea.kr

## ○ 인증기관

- 국토안전관리원 국가내진센터 ☎ 055-771-4888 / seismiccerti@kalis.go.kr

## ○ 지자체

시·도	민간 건축물 내진보강 지원
서울	02-2133-6988
부산	051-888-2964
대구	053-803-4552
인천	032-440-3369
광주	062-613-2684
대전	042-270-5974
울산	052-229-4085
세종	044-300-3225
경기	031-8008-8442
강원	033-249-3835
충북	043-220-2465
충남	041-635-3254
전북	063-280-4379
전남	061-286-3724
경북	054-880-2367
경남	055-211-2834
제주	064-710-3948

### 민간건축물

# 내진보강지원사업

지진으로부터의 안전 확보를 도와드립니다!



# 0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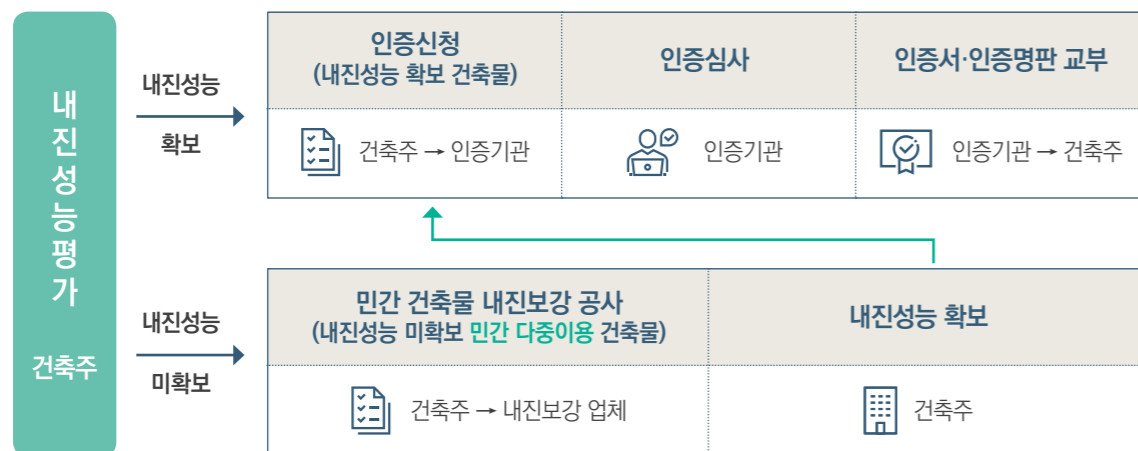
## 민간 다중이용 건축물 내진보강비용 지원 사업 개요



- 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절차 진행 중 내진성능평가 결과가 내진성능 미확보로 나온 경우, '민간 건축물 내진보강비용 지원 사업'을 통해 내진보강공사 비용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🎯 **사업목적** 지진으로 건축물 붕괴 시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위험이 있는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통해 국민안전 확보
- 📋 **사업내용** 민간 다중이용 건축물의 내진보강공사비용 일부 지원
- 👤 **지원대상** 최우선적으로 내진보강이 필요한 민간 다중이용 건축물  
\* 문화, 종교, 관광숙박 시설 등 연면적 1천㎡ 이상의 (준)다중이용 건축물

-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
  -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
    - \* 문화 및 집회시설(동물원 및 식물원 제외), 종교시설, 판매시설,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,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,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
  - 16층 이상인 건축물
-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준다중이용 건축물
  -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
    - \* 문화 및 집회시설(동물원 및 식물원 제외), 종교시설, 판매시설,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,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, 교육 연구시설, 노유자시설, 운동시설,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, 위락시설, 관광 휴게시설, 장례시설

- 🔍 **지원형태**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여 보조금 지원  
- 국비 10%, 지방비 10%, 민간자부담 80%



# 02

## 민간 다중이용 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 사업 추진절차



- 💰 **예산액** 국비 1,467백만원\*  
\* 30개소 × 489백만원 × 10% (국비 10%, 지방비 10\*, 민간자부담 80%)
- 🕒 **사업기간** ~ '23.12.31.
- 👤 **지원형태** 자치단체 자본보조  
- 내진보강공사(설계비 포함) 비용 지원(국비 10%, 지방비 10\*, 민간자부담 80%)  
\* 지방비 부담율은 재정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, 최소 10% 이상 확보토록 권장
- 📋 **교부·관리** 행정안전부
- 📺 **시행주체** 지방자치단체(시·도 및 시·군·구)
- 📅 **추진절차** 수요 확보 → 사업실시(선금지급) → 사업완료(잔금지급)

